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5107763 판결 [보증금 채무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단 의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나. D은 2005년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재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D은 2012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원고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다가 적발되었다.

다. D은 2021. 11. 1.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등 제 수당 합계 약 6,600만 원을 원고의 손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며, 나머지 손해액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21. 11. 30., 나머지 3,000만 원을 2021. 12. 31.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7,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2021. 11. 말일과 2021. 12. 말일에 각 3,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E공증인합동사무소 증서 2021년 제221호).

마.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들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명의로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F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피고들 몰래 피고들의 도장을 만들고 이 사건 확약서의 보증인란에 피고들의 명의로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피고들 명의의 인영은 피고들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거나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태곤